학생활동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학칙 제17장 및 학생준칙의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 생 단 체

제 2조 (정의 및 구분) ① 학생단체라 함은 본 대학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학생들의 모임을 총칭한다.

② 학생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 3조 (등록요건) 모든 학생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칙 제97조 및 학생준칙에 부합하는 내용의 학생활동을 추구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2.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3.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등록절차) ①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신청서(학생단체서식 1호) (개정 2015. 1. 26)
2. 지도교수 지도승인서(학생단체서식 2호) (개정 2015. 1. 26)
3. 회원명단 및 서약서 (학생단체서식 3호) (개정 2015. 1. 26)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5. 단체의 조직도
6.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학생단체서식 4호) (개정 2015. 1. 26)
7. 발기인 총회 회의록

② 단체는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 재등록 신청서(학생단체서식 1호) (개정 2015. 1. 26)
2. 회칙(단, 개정되었을 경우)
3. 임원 및 회원명단(학생단체서식 3호) (개정 2015. 1. 26)
4. 전년도 활동실적 및 결산보고서(학생단체서식 5호) (개정 2015. 1. 26)
5. 신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학생단체서식 4호) (개정 2015. 1. 26)
6. 이상의 구비서류에 대한 지도교수의 의견서

제 5조 (승인) 제4조의 등록절차를 이행한 학생단체는 학생처장이 승인,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한다.

제 6조 (지도교수) ① 학생회에 소속된 학생기구의 지도교수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타 단체의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받은 교원으로 한다.

② 각 학생단체의 지도교수는 해당 단체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가 장기간의 해외출장이나 기타 사유로 학생단체를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른 교수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제 7조 (활동기간) 승인된 학생단체의 활동기간은 매학년도 말까지로 하며, 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8조 (변경신고) 학생단체의 회칙, 조직 및 기타 중요사항에 변동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활동제한 및 금지) 학생단체의 활동이 본 대학 학칙 및 본 시행규칙에 위배될 때에는 총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학생단체의 해산
2. 일정기간의 활동정지
3. 기타 교육상 필요한 조치

제10조 (비품관리) ① 각 단체에 지급된 비품을 손망실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장이 변경될 경우는 학생지원팀장의 입회하에 업무 및 비품에 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③ 비품은 각 단체장이 관리하며 손망실된 비품은 각 단체에서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동 아 리

제11조 (목적)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17장에 규정한 학생단체 중 동아리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자격 및 범위) 모든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에 속하고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단, 신입생은 1학기에 준회원, 2학기에 정회원으로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요건) 동아리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정회원이 5개 전공으로 구성된 2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3. 설립목적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하며 활동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동아리는 최대한 통합한다.
4. 동아리의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각 동아리는 지도교수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취임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등록절차 및 승인) 동아리 등록(신규, 재등록 포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동아리연합회장 명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시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체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지도교수 지도 승인서 1부(소정양식)
3. 단체규약 및 회칙 1부
4. 단체원 명부 및 서약서 1부
5. 연간(학기별) 활동계획 및 전년도 실적(재등록시)보고서

제16조 (임원선출)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동아리의 회칙에 따른다.

②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임원명단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하며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동아리 활동을 책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겸임할 수 없다.

④ 지도교수는 해외연구파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일 경우 학생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위임교수에게 일정기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 ①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필요할 경우 동아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활동범위)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학술・문예・종교・봉사・취미・스포츠 분야로 한다.

③ 모든 활동은 지도교수가 승인한 활동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④ 모든 활동의 집행 및 사업은 최소한 행사집행일 1주일 전에 행사 허가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모든 행사는 종료 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 보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모든 동아리는 학생들의 면학과 학교 행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 (동아리실 관리) ① 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실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음주, 취침 행위를 금지한다.

③ 동아리실 사용시간은 08:00 ~ 21:00로 한다. 단, 21시 이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6)

④ 동아리실에서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⑤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취소한다.

제21조 (간행물 발간허가 신청) 순수학술 이외의 간행물은 일체 발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 발간할 수 있다.

제22조 (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호의 위배된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3. 회칙 및 학칙을 위반한 경우
4. 동아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본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5. 지도교수 사임 후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6.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7.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로 인정되어 통폐합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8. 학교의 정당한 지시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23조 (비품관리) 동아리실에 비치된 비품을 손망실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교 내 집 회

제24조 (정의) 교내집회라 함은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없이 본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제25조 (집회신청) 교내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7일전까지 소정양식의 학생활동계획서(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일계획서 1부를 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집회공고) 집회공고는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집회장소) 집회허가는 집회장소의 강의에 대한 지장 유무의 확인(교무처)과 그 장소를 관리하는 부처(교무처, 사무처)의 사용허가를 얻은 후에 행해져야 한다.(개정 2015. 5. 1)

제28조 (집회의 제한) 매학기 중간고사 및 학기말고사 개시 1주일전부터 시험 종료시까지 각 단체는 일체의 집회를 가질 수 없다.

제29조 (확성기의 이용) 옥외에서 집회할 때에는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확성기의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교 외 집 회

제30조 (정의) 교외집회라 함은 본 대학 학생단체가 외부단체 또는 외부인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모든 집회를 총칭한다.

제31조 (집회신청) ① 교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10일전까지 학생단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정양식의 학생활동계획서(별지 서식)를 학생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외집회 신청을 할 때에는 학생활동계획서에 집회관련 제반자료(각종 홍보물의 원안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타 대학과 공동으로 집회를 갖고자 할 때에는 집회예정 1개월 전까지 소정양식의 학생활동계획서(별지 서식)를 학생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집회공고) 교외집회 공고는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제33조 (정의) 홍보물은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본 대학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교내 홍보물(현수막 포함)과 외부인이 본 대학 학생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게시하는 교외 홍보물로 구분한다. 단,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외에 공지하기 위해 홍보하는 게시물은 교외 홍보물로 간주한다.

제34조 (게시 또는 배포) ① 학생회, 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에서 홍보물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부 또는 전공(학과) 단위의 행사로서 소속 학부(전공, 학과)의 지정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은 학생처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35조 (홍보물의 게시 기간 등) 홍보물의 게시는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익일 오전 9시까지로 하며 홍보물을 게시한 자는 게시기간 종료 즉시 이를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36조 (게시장소) 게시는 지정된 게시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유리창 또는 건물 내외의 벽면, 바닥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는 게시할 수 없다.

제37조 (홍보물 등의 게시·배포 승인 절차) ① 홍보물 등을 제작·게시·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홍보물 원고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허가원을 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1항의 허가원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한다.

③ 허가서를 발부 받은 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 또는 배포한다.

④ 외부단체의 홍보물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술, 예술, 체육에 관한 행사 및 취업홍보, 기타 본교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물인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 (교외 홍시물의 게시) 외부 게시물을 학내에 게시하거나 본 대학 및 학생단체가 제작한 게시물을 외부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 10일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허가원을

학생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보호 및 책임) 학생이 허가를 얻어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철거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상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40조 (승인받지 아니한 유인물 및 게시물에 대한 처리) ① 이 시행규칙에 의거 승인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③ 게시기간이 경과된 게시물의 경우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 7 장 인 쇄 물

제41조 (정의) 인쇄물은 배포할 목적으로 인쇄, 타이핑, 복사한 일체의 문서를 총칭하며, 본 대학 학생 및 학생단체가 교내에 배포하기 위한 교내인쇄물과 교외에서 제작되거나 교외에 배포하기 위한 교외인쇄물로 구분한다.

제42조 (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학생 및 학생단체가 제41조의 목적으로 교외인쇄물을 제작 혹은 배포하고자 할 때는 배포 10일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활동계획서를 학생팀에 제출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3조 (기타) ①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처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6)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

제1조(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처'를 '사무처'로 한다.